

## 2015년판 『건축설비기사 4주완성』 2차 정오표 [2015.3.4.]

page	오	정	비 고
[위생] 351	핵심PLUS [예3]	답: 나→라	15.1.6개정사항 ☞ 하단참조
352	비상콘센트설비 ①설치 : 7층 이상의	비상콘센트설비 ①설치 : 11층 이상의~	“
362	[34]해설란 ②설치 : 7층 이상의	②설치 : 11층 이상의~	“
[공조] 409	핵심PLUS [예3]	답: 나→다	
[법규] 702	핵심PLUS [예1]	답: 나→가, 나	
[과년도] 299	[21]해설란 중...	전양정(H)={60+15+10}×1.15=97.75=98m	☞ 하단참조(추가해설)

### ☞ 하단참조 내용

#### ☞ 448p 수정부분 관련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에서  
최근 개정법 15년1월6일(시행일 15.4.7)에서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는 층수로 11층 이상인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시행일이 15.4.7일자이므로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개정사항이기에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NFSC 504)이

11층→7층→11층 그리고 지하층 포함에서 지하층 제외로...

설치높이 1~1.5m→0.8~1.5m로...

최근 잦은 법개정으로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 과년도 299p 수정부분(추가해설)

실양정 60m+마찰손실수두 15mAq(=15m)+스프링클러 노즐 소요수압(0.1MPa=10m)

∴ (60+15+10)×1.15=97.75=98m

해당 소화전의 노즐 소요압력을 계산해주어야 한다는 점과 소화용 펌프의 전양정은 각 수두를 합  
계한 값에 10~20% 정도 여유(안전율)를 두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즉, (흡입양정+토출양정+마찰손실수두+소화전의 노즐 소요압력)×안전율...

로 계산됩니다.

## 2015년판 『건축설비기사 4주완성』 1차 정오표 [2015.2.13.]

page	오	정	비 고
[일반] 148	(2)기둥...②.. ~ 원형기둥에서는 6개 이상	원형기둥에서는 4개 이상(나선철근 : 6개 이상)	
[공조] 392	25번 ㉔ ~상대습도는 낮아진다.	㉔ ~상대습도는 높아진다.	
[법규] 675		☞ 하단참조	법 개정
676	※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 중에서...	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	
691		☞ 하단참조	법 개정
711	5. ㉔..㉕ 중에서	여관, 여인숙 ... 삭제	법 개정
719		☞ 하단참조	법 개정
부록 110	(83)번 해설 수정	☞ 하단참조	

### ☞ 하단참조 내용

[건축법규 개정, 신설사항에 유의하여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675p [표] 수정부분(지방건축위원회)

②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단,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 삭제

④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691p [표] 수정부분(1. 및 8.항 추가)

#### 1.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구 분	구조계산 대상 건축물
1. 층수	3층 이상 (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필요 있는 지역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 2층 이상)
2.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3. 높이	13m 이상
4. 처마높이	9m 이상
5. 경간	10m 이상 *경간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함)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8. 특수구조 건축물 중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 719p [표] 수정부분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협력사항
건축구조기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층 이상 건축물</li> <li>• <b>특수구조 건축물</b></li> <li>• 다중이용 건축물</li> <li>• 지진구역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li> </ul>	

☞ [참고]

▶ **특수구조 건축물**

- 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m 이상**인 건축물
-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최근 개정, 신설된 법 주요내용 추가정리

▶ **특수구조 건축물**

- 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m 이상인 건축물
-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실내건축**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①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 ②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 ③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 배수(排水)·환기시설의 재료
- ④ 실내에 설치하는 층돌·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 건축물의 범죄예방(법 제53조의2, 영 제61조의 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은 상기 ①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부록 2011년 6월 111p (83)번 문제...[해설] 수정부분

83번 문제...

[해설]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경우)

①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전층

—㉠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m<sup>2</sup>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m<sup>2</sup> 이상

—㉢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m<sup>2</sup> 이상

—㉣ 무대부가 ㉡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m<sup>2</sup> 이상

[해설] 소방시설 설치의 예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화설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영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참조)